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-178호

강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15-2번지 외 1필지 강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(02-2600-6150)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1. 11. 1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강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(1) 성 명: 강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문지연

(2) 주 소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4길 38

다. 사업개요

(1) 위 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15-2 외 1필지

(2) 시행면적: 1,449.00㎡(대지면적: 1,449.00㎡)

(3) 건축규모: 지하1층/지상15~16층, 아파트(1개동, 15세대),
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(1개동, 다세대주택 12세대, 오피스텔 42호),
연면적 4,040.12㎡
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2021. 11. 9.
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(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용 도		대지면적(㎡)	동수	층 수 (지상/지하)	세대수	건축연면적(㎡)	비고
공동 주택	분양	842.64		16/1	27	2,329.50	
	임대						
업무시설(오피스텔)		606.36		15/1		1,710.62	42호
합 계		1,449.00	2			4,040.12	

(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 분	주택규모별(전용면적(㎡) 기준) 공급 세대수			오피스텔
	합계	83.93	25.11	
토지등소유자	15	15		122.13 (3호)
일반분양	12		12	1,547.78 (38호)
보류지				40.71 (1호)
임대				
합계	27			1,710.62 (42호)

(3)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: 해당 없음

(4)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: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(예정)